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

1. 계약 목적 및 대상자

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
2. 계약 기간

- 가.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나.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,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다.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라.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.)
- 마.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3. 계약 만료 및 재계약

- 가.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서 갱신했을 경우, 등급변경 신청으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한다.
- 나.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“변경된 수가를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반영한다.”는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공지 및 안내 후 동의를 얻고 수가 변경을 적용한다.
- 다. 개인별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본인부담율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반영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공지 및 안내 후 동의를 얻고 수가 변경을 적용한다.
- 라. 개인별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전화나 문자로 알리고 갱신계약서(변경계약서)는 생략할 수 있다.
- 마.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

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4. 계약 해지 조건

- 가. 생활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
- 나.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다. 생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라. 시설 제반 운영규정 및 타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마. 배회성, 폭력성 등으로 다른 생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
- 바. 생활인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은폐한 경우
- 사. 생활인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(단,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생활인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- 아.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(보호자)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

5. 서비스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

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입소자(수급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.

가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- (1)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- (2)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(3)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나. 수급자의 의무

- (1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(2)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(3)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
- (4)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다. 수급자의 권리

- (1)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(2)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(3)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(4)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(5)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- (6)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(7)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(8)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라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- (1)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(2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(3)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(4)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(5)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마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

- (1)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(2)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(3)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(4)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6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가. 본인 일부 부담금 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,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.

나.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 자료 1을 1부 첨부한다.

다.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

(1)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

1/2/4인실 : 식재료비- 1회 4,500원

1/2/4인실 : 간식비- 1일 2회 3,200원

(2)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.

(3) 특별 보호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.

라.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.

*급여내역(2025.01.01.~25.12.31.)

기준: 31일, 단위: 원

구분		1등급	2등급	3, 4, 5등급
수가		90,450	83,910	79,240
내역	공단	$90,450 \times 0.8 \times 31 = 2,243,160$	$83,910 \times 0.8 \times 31 = 2,080,968$	$79,240 \times 0.8 \times 31 = 1,965,150$
	본인	$90,450 \times 0.2 \times 31 = 560,790$	$83,910 \times 0.2 \times 31 = 520,242$	$79,240 \times 0.2 \times 31 = 491,288$

*비급여내역

구분		비용(1식)	내역	합계
1/2/4 인실	식재료비	4,500	4,500×3×31=418,500	517,700
	간식	1,600	1,600×2×31=99,200	

상급침실	1인실A : 88,000×31=2,728,000 1인실B : 78,000×31=2,418,000 2인실A : 50,000×31=1,550,000 2인실B : 40,000×31=1,240,000
기타	이·미용비(전문가초빙), 전동칫솔, 원거리교통비, 화장품, 향수, 이미용품, 건강기능식품, 개인취미생활용품, 개인 희망에 의한 외부강사초빙프로그램 제공시, 병원비 및 약제비 등 개인부담

*등급외자는 계약시 당사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.

(붙임 1. 자료 1부. 끝)

7. 이용료의 납부 방법

- 가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달 6일 납부하기로 한다. (6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 ※계좌번호 : 국민은행 485501-01-373277
- 나. 입소자(또는 보호자)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.
- 다.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.

8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- 가. 이용료 변경시 안내 절차
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,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.
- 나. 비용에 대한 변경
 - 가.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- 나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 - 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 - 라.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
9.급여비용 변경절차

가. 본인부담금 변경절차

- (1)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정심사후 갱신→ 보호자상담
→ 재계약
- (2) 수가 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

나.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

- (1) 물가의 변동(식재료비) → 보호자 상담 → 재계약

10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가. 서비스의 내용

- (1) 급식서비스 :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(2) 상담서비스 :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.
- (3) 의료서비스 :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.
- (4) 목욕서비스 : 신체적·정신적 상태 및 기능, 계절에 따라 목욕 방법, 횟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.
- (5) 기능회복훈련서비스 :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.
- (6)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: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
- (7) 여가활동 서비스 :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.
- (8) 위생케어 서비스 :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 케어 서비스이다.
- (9) 이·미용서비스 : 컷트에 한함

나. 비용의 부담 : 1항의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한다.

11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·면책범위

가. 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,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.

나.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.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단, 시설장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 할 수 있다. <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부분 추가>

12.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

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,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.

13. 업무외의 재해

시설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